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오천수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1365
--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19. 5. .

발 의 자: 오천수의원

찬 성 자: 황선화의원, 이민옥의원

양옥희의원, 김현주의원

이성수의원(5명)

1. 제안이유

성동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체 치안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방범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성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치안유지와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구성(안 제3조)
- 다.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 및 활동범위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치안봉사단의 설립 신고(안 제6조)
- 마. 치안봉사단에 대한 경비 지원, 지도 및 감독(안 제7조 ~ 제8조)
- 바. 치안봉사단에 대한 교육 및 표창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와 제7조,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와 제3조
- 나. 예산조치: 구청과 협의
- 다. 입법예고: 2019. 8. 12. ~ 8. 16.(5일간)
- 라. 기 타: 특이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동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외국인 등”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2. “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”(이하 “치안봉사단”이라 한다)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성동구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치안봉사단은 단장, 부단장, 총무 및 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활동분야)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범죄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활동
2.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
3.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·지원

4.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제5조(활동범위)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성동구 관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 그 외 지역까지 할 수 있다.

제6조(신고 등) ① 치안봉사단을 신설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9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, 치안봉사단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9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)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)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봉사단 및 모범 단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치안봉사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()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					처리기간 15일
설립자	① 대표자 성명	한글		② 생년월일	
		한자			
③ 주 소					
신청내용	④ 명 칭				
	⑤ 목 적				
	⑥ 초 소 위 치	(연락처 :)			
	⑦ 총 인원				
	⑧ 시설 · 장비				
	⑨ 설립 연월일				
	⑩ 순찰동선 (범위)				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 1부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
------	---

()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

1. 치안봉사단 대명(대표자명):

2. 단원수:

3. 순찰일시/횟수:

4. 단원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자영업	회사원	서비스업	건설업	기타
계						
20~29세						
30~39세						
40~49세						
50~59세						
60세 이상						

5. 장비보유현황

○ 방범초소 설치현황

▷ 위치 :

구 분	설치연도	설치형태	면적(m ²)	설치재원	비고
초소				(자체설치, 공공건물, 행정기관 지원, 기타)	

○ 장비보유내역

(단위 : 개, 대)

구 분	무전기	가스총	순찰봉	순찰차량		오토바이	기타
				차종	대수		

()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

()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

구 분	근무조장 (휴대전화)	근 무 조 원	비 고
제1근무조			
제2근무조			
제3근무조			
제4근무조			
제5근무조			
제6근무조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()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

설립자	① 성명	한글	② 생년월일	
		한자		
	③ 주소			
신청내용	④ 명칭			
	⑤ 목적			
	⑥ 초소위치	(연락처 :)		
	⑦ 총인원			
	⑧ 시설·장비			
	⑨ 설립연월일			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
[별지 제3호 서식]

() 외국인 치안봉사단 등록대장

관련법령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”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” 이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8. 29.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19. 5. 13. 오천수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19. 8. 19.
- 다. 상정일자: 2019. 8. 27.

(제24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- 가. 제안설명: 오천수 의원
- 나. 제안이유

성동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체 치안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방범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성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치안유지와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구성(안 제3조)

- 다.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 및 활동범위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치안봉사단의 설립 신고(안 제6조)
- 마. 치안봉사단에 대한 경비 지원, 지도 및 감독(안 제7조 ~ 제8조)
- 바. 치안봉사단에 대한 교육 및 표창(안 제9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와 제7조,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와 제3조
- 나. 예산조치: 구청과 협의
- 다. 입법예고: 2019. 8. 12. ~ 8. 16.(5일간)
- 라. 기 타: 특이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-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주민도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 치안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, 외국인 치안봉사단 구성 및 활동 분야,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
-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,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한 활동 등, 언어 및 문화적 소통의 제약이 따르는 외국인 등의 안전 관리와 보호를 위한 특화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
- 다만,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단체인 점을 고려 봉사단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봉사활동 내용 및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

으로 여겨지고, 경비 지원시에는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봉사 단체인 점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계획 및 실적 등을 감안한 적정 예산을 지원하고,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